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직접판매지원 지원기업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'11번가' 와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'직접판매지원'을 진행하오니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.

> 2025. 02. 28.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워장

1 모집 및 신청접수

- 모집공고: 2025. 2. 28.(금) ~ 3. 21.(금)
- 신청기간: 2025. 3. 4.(화) ~ 3. 21.(금) 17시까지 ※ 신청기간 엄수
- 신청대상: 도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기업
 - ※ 최근 2년간('23~'24) 직접판매지원 참여기업은 신청 불가, '온라인판매기반조성'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
- 신청방법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 접수 ※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
 - 홈페이지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www.jbsos.or.kr) 회원가입 후, 민생신문고 - 사업신청게시판 - 글쓰기 신청
 - 우편 및 방문: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전북소상공인광역 지원센터 3층 소상공인지원팀
 - ※ 우편 접수는 도착일 기준 ※ 방문 접수 시, 주말(토, 일) 신청 불가
- 문 의 처: 소상공인지원팀 이채명 담당관 ☎ 063-717-1308

2 지원내용

- 지원규모: 4개사
- O 지원금액: 기업 당 5백만원
- 지원내용: 할인쿠폰 제공, 홍보, 교육, 배송비 지원 등 판매지원
- 유통채널: 11번가 ※ 판매대금 및 정산은 유통채널과 참여기업간 계약으로 진행
- O 제외대상
 -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
 -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업종(붙임 1)
 - 비영리 개인사업자 · 법인
 - 기타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

3 운영절차

공고 및 신청접수

● 공고기간: 2. 28.(금)~3. 21.(금)

● 접수기간: 3. 4.(화)~3. 21.(금) 17시까지

T

선정평가 (평가는 11번가 MD가 진행) 서류검토: 3. 24.(월)~28.(금)

서류평가: 3. 31.(월)~4. 4.(금)

● 선 정: 4. 9.(수)

※현장점검 필요 시 진행

Ψ

협약체결

협약체결: 4. 10.(목)~18.(금)

- 진흥원-지원기업-11번가 간 협약 진행

Ψ

프로모션 지원

● 프로모션 진행: 4~10월

- 할인쿠폰: 4월~소진 시까지

Ψ

지원금 정산

- 정산시기: 프로모션 종료 후 지원금 지급
- 비용은 업체 선지급(지원기업→11번가)

※ 상기 일정·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신청서류

○ 제출서류(**필수제출**)

순	제출서류	수량	비고
1	참여신청서	1부	서식 1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	1부	서식 2
3	사업계획서	1부	서식 3
4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	1부	첨부 1
5	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*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발급	1부	첨부 2
6	통신판매업신고증	1부	첨부 3

5 유의사항

- O 신청 제외대상
 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, 연체, 부도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
 - <u>중소벤처기업부 **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**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는 신청 불가</u>
-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참여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 자격 제외,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O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은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추후 진흥원 또는 협약 채널에서 요청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평가는 신청기간 내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진행
- 공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에게 귀속됨
- O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
붙임

○ 지원제외 업종 1부. 끝.

【붙임 1】지원 사업 참여 제한 업종

지원 사업 참여 제한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	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10440 40447 7	모피제품 도매업
46416, 46417 중	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 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 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 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	부동산업
	▼ 등 근 ㅂ ★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
	* 구승인의 임대, 구매, 현매에 된민되는 현립활동으로서, 역립 선물인 구기용 및 미 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 포함
	•
	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
68	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
	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
	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
	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
	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
	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	- 가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